

『남북교류협력지원』

주요 업무 보고

2005. 9. 13

經營企劃室

보 고 순 서

- I.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과 전략 1
- II. 최근 남북관계 동향 2
- III.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5

【別 添】

- 1.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9
- 2.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시행규칙 14

I.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과 전략

정부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한 공동번영 추구를 위해 단계별로 북한 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1. 목표 및 추진원칙

목 표

- ▶ 한반도 평화증진
- ▶ 공동번영 추구
 -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 동북아 공동번영 촉구

추진원칙

- ▶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 ▶ 상호신뢰우선과 호혜주의
- ▶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 ▶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2. 추진전략

- 1단계 : 북한 핵문제 해결

- ▶ 북한의 핵불용
- ▶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 ▶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

평화증진 가속화

- 2단계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협력 심화

- 3단계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남북평화협정 체결

3. 당면 추진 방향

- 남북관계의 내실화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등 「제2의 6.15 시대」를 개막, 대북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
- 평화번영 정책의 기조 아래 모처럼 찾아온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모색

II. 최근 남북관계 동향

- ◆ 2004년 7월 이후 조문문제, 탈북자입국 문제, 북한의 6자회담 불참과 금년 2.10 핵보유 선언 발표 등으로 중단됐던 남북관계가 북측의 비료요청에 따른 대화재개 이후,
- ◆ 6.15 통일대축전, 8.15 민족대축전 등으로 이어지면서 북측의 6자회담 복귀에 이르고 있음

□ 남북관계의 개선

- 금년 1월부터 북측의 적십자사를 통한 지속적인 비료요청에 대하여 비료 지원 관련 남측의 남북 차관급회담 제안 북측 수용
- 남북 차관급 회담('05. 5.16 ~ 19, 개성)
 - － 『6.15 통일대축전』에 정부대표단 참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6.21~24일 서울개최,
인도적 차원의 비료 20만톤 지원 합의

□ 남북 차관급회담 이후 6.15 통일대축전, 남북장관급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이 연이어 추진됨

① 6.15 통일 대축전('05. 6.13 ~ 6.17, 평양)

- － 방문단규모 : 남측민간대표 295명, 당국대표단 40명,
재외동포대표단 100명
- － 의미와 성과
 - ▶ 6.15선언의 정신 재확인
 - ▶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을 통한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발전의 좋은 환경 조성, 한반도 정세 불안감 해소

②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05. 6.21 ~ 6.24)

○ 남북차관회의 후속으로 '05. 6.21 ~ 6.24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 8.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 파견, 이산가족 상봉 8.26부터 실시(제6차 적십자회담 8월중 개최),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범개시, 식량지원(40만톤) 등 합의

③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05. 7. 9 ~ 7.12, 서울)

○ 경제협력 추진위원회는 제10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12개항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의류·신발·비누 등의 원자재 북측제공, 북측은 지하자원 개발 투자 보장, 개성공단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 경의선·동해선 조속한 공사완료 및 10월중 열차시범 운행과 철도개통식 실시
- 북측에 대한 쌀 50만톤 지원 등

□ 본격적인 남북대화 전개 속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으로 남북관계는 급진전함

① 북한의 6자회담 복귀

○ 북한은 7월 마지막주(25일이 시작되는 주)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미국과 합의

-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침공의사가 없음을 북경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차관보와 협의를 통해 확인하고 6자 회담틀 안에서 양자회담 공식 확정

- 7.29부터 8. 7까지 제4차 6자회담이 북경에서 진행되었으나 성과물을 내지 못한 채 3주간 휴회하기로 하고 중단함
 - " 미국이 정당한 평화적 핵 활동 권리를 보장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근본적 이유임 "
 - (김계관 북측대표, 조선일보 '05.8.8 보도)

② 사회문화교류 추진 활발

- 광복 60주년 기념을 위한 「8.15민족대축전」 개최('05 8.14 ~ 17, 서울)
 - 대표단 규모 : 북측민간대표단 100명, 남측민간대표단 400명, 해외측 민간대표단 150명
 - 이 기간동안 북한 대표단은 국립 현충현 참배(8.14), 대통령을 예방(8.17)을 하였으며
 - 또한 남북통일축구경기[8.14(남), 16(여)]가 개최되었음
- 남북이산가족 첫 화상상봉 (8.15, 남북 각각 40가족)
 - 서울 대한적십자사 등 전국 11개 상봉장과 북측 평양 상봉장을 화상으로 연결
- 제 6차 남북적십자회담(8.23 ~ 8.25, 금강산)
 -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의견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함
 - 화상상봉, 서식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지속 실시와 정례화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양측이 의견을 같이 한 만큼, 추후 합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Ⅲ.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 ◆ 6.15 남북공동성명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는 중앙정부나 대북관련 단체차원에서 주도함
- ◆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남북의 화해 분위기 조성, 향후 통일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반도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갖가지 제약과 질곡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냉혹한 국제사회의 생존경쟁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함
- 6·15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화해와 협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통일이 기대보다 빠른 시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정부의 통일정책 지원과 지방차원의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

□ 추진방향

- 남북간의 대화를 통한 신뢰감 구축 및 상호이해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
-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질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사업 추진
- 문화·학술·체육 등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

□ 제정취지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와 협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등 제정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2004. 7월 제정)

- 문화·체육·학술·경제분야 등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등으로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05. 1월 제정)

- 기금 운용계획, 기금지원 대상 및 절차 및 지원금 교부
 - － 기금 지원대상
 - ▷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 ▷ 서울시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 기타 서울시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개인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 조성내역 : 200억원('04년 100억원, '05년 100억원)
- 주요사업 내용
 - 「서울과 평양 축구대회」 개최 추진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 학술·문화·체육·경제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자체추진 및 지원
 -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등

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
- 구 성 : 14명(외부위원 11, 당연직 3)
 - 위 원 장 : 박인주(서울흥사단 대표)
 - 위 원 : 북한학자,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임 기 : 2년
- 기 능 :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자문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등

- 「서울·평양 축구대회」 부활추진
 - 남북 분단으로 말미암아 1946년 8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서울과 평양 축구대회」의 부활을 추진
 - 그간의 추진경과
 - 상암 월드컵경기장 기공식에서 서울시장이 공식제의('98.11. 6)
 - 제3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서울·평양 축구대회 적정한 시기에 논의키로 합의('00. 9.27 ~ 30)
 -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축구경기(9. 5 ~ 9.8, 서울) 개최합의('02. 8.12 ~ 14)
 - 남북통일축구 경기 개최('02. 9. 7, '05. 8.14 서울 상암경기장)
 - 서울·평양 축구대회 개최 지속적으로 협의 중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 우리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장기적 추진과제, 사업분야 추진방안 도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공동연구 추진
- 실현가능한 분야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 학술·문화·체육·경제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 프로그램 등 발굴
-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등
 - 북측의 불의의 사고나 재난발생시 인도적 차원의 북측지원(예 : 용천사고)
 - 북한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 등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2004.7.20 조례 제42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기타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경영기획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획담당관
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지원사무 담당사무관

제7조(보고 및 환수) ①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8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2.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3. 시 관계공무원
4. 시의회 의원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재단의 설립) ①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해 서울남북교류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재단설립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
2.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받은 남북교류협력사업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3조(재단의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사업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14조(재단의 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공고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재단의 임원) ①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각계 인사, 시의회 의원,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그 외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6조(재단 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재단의 이사회) ①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

④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재단의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업무계획등) ①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시 또는 자치구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4조(재단의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2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시행규칙

2005.1.15 규칙 제34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운용계획)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사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3. 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제4조(지원절차) ①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
 - 가. 남북교류협력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
 - 나.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정관
 - 다. 법인 또는 단체명의로의 예금통장 사본
2. 개인 :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
 - 가. 사업계획서
 - 나. 주민등록등본

다. 본인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지원목적외 사용) 조례 제7조제2항에서 “기금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된 기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된 기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및 반납)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에서 “시 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의 경영기획실장·산업국장 및 문화국장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사무를 담당하는 담당관·과장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